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3일,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9.17.)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9.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홍철의원)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

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면·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등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생태관광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도 규정하고 있음¹⁾.

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한편, 전국 3,785개 읍·면·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내무부의 허가에 따라 설립되어 자연환경보전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여·계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조사·연구 활동 등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제정(’91.12)이후인 1998년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전단체 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유사 법정단체에 비해 안정적인 지원금 확보가 어려워 사회적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자연보전단체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체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382	532	479	438	401
법정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27	42	42	38	38
	자연환경국민신탁	100	200	200	180	180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한국자연공원협회	50	50	50	45	45
	(사)한국생태관광협회*	70	70	70	70	70
공모	(사)자연보호중앙연맹	90	117	92.7	-	30
	(사)한국물새네트워크	-	-	-	-	-
	환경운동연합	-	-	-	-	-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45	53	-	30	-
	(사)환경문화연대	-	-	-	11	10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	-	-	20	-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	-	-	11	
	(사)환경보전대응본부	-	-	-		13
	(사)녹색환경보전협회	-	-	-	10	
	(사)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	-	-	24.3	23	15

* 생태관광협회의 경우, 보조사업연장평가('20.3)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관리('21~)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설립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획재정부는 ① 현행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개정안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설립 목적 및 수행업무가 유사한 측면이 있고,

②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에 비해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③ 개정안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인

정하는 경우 다른 자연보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개정안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와 자연보호중앙연맹 비교]

구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 목적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 사·연구·홍보 및 보전사업 등 수행	내무부 주도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전 개를 위해 설립																																				
설립 연도	'63년 자연환경 관련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 * 문화부 → 산림청 → 내무부 → 환경부 ('90)로 주무관청 변경	'77년 내무부 설립허가로 설립 * '98.2.28 환경부로 이관																																				
주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제1항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 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개정안 제55조의3 1. 자연보호운동의 실천을 위한 시민 참 여 활동 2.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조사·연구 활동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천 및 홍보 활동 4.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단 체와의 협력 증진																																				
조직	사무국, 부설연구소, 전문위원회, 서울·경 기 등 9개 시·도지부	시·도협의회(17개), 시·군·구협의회(192개)																																				
회원	학술, 일반, 단체회원 등 1,500명	약 60만명																																				
예산 지원	'06년~'20년 기간 총 925 백만원 (연 평균 62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table><tr><td>연도</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tr><td>금액</td><td>27</td><td>42</td><td>42</td><td>38</td><td>38</td></tr><tr><td>방식</td><td colspan="5">직접 지원</td></tr></table>	연도	'19	'20	'21	'22	'23	금액	27	42	42	38	38	방식	직접 지원					'06년~'20년 기간 총 1,492 백만원 (연 평균 99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table><tr><td>연도</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tr><td>금액</td><td>90</td><td>117</td><td>92.7</td><td>-</td><td>30</td></tr><tr><td>방식</td><td colspan="5">공모</td></tr></table> * 18년 이후 자연보전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 청 후 지원으로 전환²⁾	연도	'19	'20	'21	'22	'23	금액	90	117	92.7	-	30	방식	공모				
연도	'19	'20	'21	'22	'23																																	
금액	27	42	42	38	38																																	
방식	직접 지원																																					
연도	'19	'20	'21	'22	'23																																	
금액	90	117	92.7	-	30																																	
방식	공모																																					

※ 출처: 환경부

4. 대체토론의 요지

2) 자연보호중앙연맹은 비법정단체이므로 연례적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자연보전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
청 후 지원으로 전환되었음.('18년 결산, 설훈·이상돈 의원)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